

2020년 제3차 임시이사회 회의록

2020. 6. 19.





사회복지법인 태백시사회복지협의회

2020년 제3차 임시이사회 회의록

개최현황

일 시	2020. 6. 19.(금) 11:00 ~ 13:00	장 소	평화반점
재직이사	하일호, 김영수, 구자국, 김종호, 이상진, 정영자, 최동숙, 허경희, 권형기, 원웅호, 금숙자 (11명)		
출석이사	하일호, 김영수, 정영자, 허경희, 권형기, 원웅호, 금숙자 (7명)		
재직감사	원기준, 최용우	출석감사	최용우
배석인	윤서영, 윤해경	기록자	윤서영



부의안건

의안번호	안 건 명	의결구분	비 고
제1호	정관변경(안)	원안 의결	



회의내용

〈 성원 보고 〉

(과 장) 2020년 제3차 태백시사회복지협의회 임시이사회는 재적이사 총 11명 중 7명 참석으로 성원되었음을 보고함.

〈 개회 선언 〉

(의 장) 2020년 제3차 태백시사회복지협의회 임시이사회 개회를 선언함.

〈 인사말씀 〉

(의 장) “바쁘신 와중에도 본 협의회 이사회에 참석해주신 이사님·감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는 정관변경(안)을 심의의결하고자 합니다.

(의 장) “과장은 전차 이사회 회의록 요약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과 장) 전차회의록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호 이사 선임(안)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전차 회의록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 장) “전차회의록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각 이사) “이의 없습니다.”

(의 장) 다음은 제1호 안건 정관변경(안)심의가 있겠습니다.

〈 안건 심의 〉

◦ 제1호 : 정관변경(안)

(의 장) 제1호 안건인 정관변경(안)을 상정하고 과장에게 제안 설명을 지시함.

(과 장)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에 본 협의회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므로 본 협의회 정관 제10장 공고방법에 포함하고자 함.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인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정관변경) 법 제17조 제2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함은 법 제17조 제1항 제11호 사항(공고 및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이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 후 가결된 내용을 정관에 포함한다.

(의 장) “제1호 안건인 정관변경(안)에 대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이사) “동의합니다.”

(의 장) 전원 제청으로 제1호 의안 정관변경(안)의 가결을 선포함.



〈 폐회선언 〉

(의장) “이것으로서 태백시사회복지협의회 2020년도 제3차 정기이사회에 부의한 안건의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 의사의 경과 요령과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이사전원 인감날인 함.

서기 2020년 6월 19일

태백시사회복지협의회

강원도 태백시 황장목이길 19-12



회장 하일호



이사 김영수



이사 정영자



이사 허경희



이사 권형기



이사 원웅호



이사 금숙자



